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1135 정보공개서 최초 등일: 2022.10.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22

# 마라벅스 정 보 공 개 서

(주)마라벅스푸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마라벅스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 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 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u>가맹거래사</u>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 씨동 266호(신길동, 리드 스마트스퀘어 지식산업센터)

대표전화: 031-408-0110 가맹사업부전화: 031-408-0110

팩스번호: 이메일: 2325kimsun@naver.com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 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 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 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 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 고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 시기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 드시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 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마라벅스	경기도 안산시 단	<u> 원</u> 구 산단	로 325, 서	시동 266	호(신길동, 리드
ᄼᄌᄭᆝᆌᄊᇴᆮ		7	느마트스퀘	어 지식신	<u>업센터)</u>	
(주)마라벅스푸드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	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08.30	2023.10.01	LI HUA (이화)	031-408-0110 -		-
	법인등록번호	131411-	사업자등	등록번호 710-86-03490		0.02400
		0564289		710-86-03490		J-00-U3 <del>4</del> 9U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11111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산단로 325, 씨동	266호(신길동, 리드
사용인	LI HUA (이화)	마라벅스	스마.	트스퀘어 지식산업센	[터)
(임원)	(314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LI HUA(이화)	031-408-0110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71.7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산단로 325, 씨동	266호(신길동, 리드
사용인	강군	마라벅스	스마.	트스퀘어 지식산업센	[터)
(임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LI HUA(이화)	031-408-0110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HL주J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산단로 325, 씨동	266호(신길동, 리드
사용인	박현	마라벅스	스마	트스퀘어 지식산업센	[터)
(임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LI HUA(이화)	031-408-0110	_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HL±1,		경기도 안산시	│ 상록구 샘골로 168	, 101-103호
대표이	박현/ 마라벅스	마라벅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사의			11141	224 422 244	
배우자			박현	031-408-0110	_

- 계열회사 정보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마라벅스	마라벅스	2023.12.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68, 101-103호	박현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당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마라벅스	-
상 호	마라벅스 OO점	-
	** 40-2021-0202955 마라박스	출원번호 : 40-2021-0202955 등록번호 : 40-2098618-0000
상표(서비스표)	MARABUCKS	출원번호 : 40-2022-0040234 등록번호 : 40-2092550-0000
광 고	MARABUCKS	마라벅스는 센스있는 인테리어와 한국식 마라팅으로 젊은층의 니즈를 파악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 밖의 영업표지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_	-	-	_	_	-
2022년	-	-	-	_	_	_
2023년	58,270	19,422	38,848	30,068	-11,152	-11,151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 관련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1)의 매출액 내용과 동일합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1 &	YI =	2 7H	기간	직위	담당 업무
	LI HUA	대표	2023.08 ~ 현재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이화)				
가맹사업	강군	이사	2023.08 ~ 현재	사내이사	경영지원
관련 임원	박현	대표	2021.09 ~ 2023.12	마라벅스 대표	가맹사업 대표
	רם	이사	2023.08 ~ 현재	사내이사	경영지원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전	임원-	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721(0)

2023년 12월 31일 3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
				내용
특수관계 인 (대표이 사의 배우자)	마라벅스 /박현	가맹사업경영	2021.9 ~ 2023.12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회사에 인도함	마라벅스(등록번호: 20221135) 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마라 벅스푸드	가맹사업경영	2023.12 ~ 현재	마라벅스(등록번호: 20221135) 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 #30149786 마라백스	출원일자 : 2021.10.06 등록일자 : 2023.10.18	출원번호 : 40-2021-0202955 등록번호 : 40-2098618-0000	박현	2033.10.18 (2033.10.18)
상표권	MARABUCKS	출원일자 : 2022.03.03 등록일자 : 2023.10.06	출원번호 : 40-2022-0040234 등록번호 : 40-2092550-0000	박현	2033.10.06 (2033.10.06)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마라벅스]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2년 11월 30일 (직영점 사업을 시작한 날 : 2021년 9월 23일 )

# 2. 해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마라벅스	마라벅스	박현	2021.09 ~ 2023.1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68, 101-103호
(주)마라벅스푸드	마라벅스	LI HUA(이화)	2023.12 ~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 씨동 266호(신길동, 리드 스마트스퀘어 지식산업센터)

#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마라벅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마다릭스	기타외식	마라탕, 마라샹궈, 꿔보우러우 새우꿔보우러우 등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7	2	021.12.3	1.	2022.12.31.		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3	2	1	11	11	_
서울	-			_	_	_	1	1	_
부산	-			-	-	_	_	_	_
대구	-			_	_	_	1	1	_
인천	-			_	-	_	1	1	_
광주	-			_	_	_	_	_	_
대전	-			_	_	_	1	1	_
울산	-			_	_	_	_	_	_
세종	-			-	_	_	_	_	_

경기	1		1	3	2	1	6	6	-
강원	-			-	ı	ı	_	ı	_
충북	1			ı	1	ı	_	1	_
충남	-			_	1	-	1	1	_
전북	-			_	_	_	_	_	_
전남	-			-	-	-	_	-	_
경북	-	-	-	-	-	-	_	-	-
경남	-	-	-	_	_	_	_	_	_
제주	-	-	-	_	_	_	_	_	_

#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	-	-	1	1	-
2022년	_	2	_	_	_	2
2023년	2	9	_	_	_	11

# 6.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가맹사업 외에 경영하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영	맹점사업자	생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략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11	290,446	25,726	435,475	72,514	103,251	9,712	7곳 산정	
서울	1	해당없음	_	_		_	_	5곳 미만	
부산	_	해당없음	_	_	ı	ı	_	5곳 미만	

대구	1	해당없음	-	_	ı	_	-	5곳 미만
인천	1	해당없음	-	_	_	-	_	5곳 미만
광주	_	해당없음	-	_	_	_	_	5곳 미만
대전	1	해당없음	-	_	_	-	_	5곳 미만
울산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세종	_	해당없음	-	_	_	_	_	5곳 미만
경기	6	360,286	31,267	435,475	72,514	321,177	22,994	4곳 산정
강원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북	_	해당없음	-	_	_	_	_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북	_	해당없음	-	_	_	-	_	5곳 미만
전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제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배달앱, 자체매출장부 및 부가세신고액에 따른 매출액 입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이 있어 일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1개가 아닌 실제 7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마라벅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마라벅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sup>®</sup>	평균 영업기간 <sup>②</sup>
2023	11	245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	비고
합계			_	
광고			_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 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수원역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31-244-
		향교로 37	68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	록	내 용
농협	매장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직접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계좌가	방문시	교부 받아 보관
있는	인터넷	① 농협 기업인터넷뱅킹 (www.ibz.nonghyup.com) 접속 → ②
사업자	뱅킹	소호센터 → ③ 가맹금예치서비스 클릭 → ④ 가맹점사업자 바로가기
	이용시	클릭 → ⑤ 가맹금 이체→ ⑥ 가맹금예치 완료
농협 계 없는 사		농협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본인이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개설시	개설시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필요서류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대리인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개설시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농협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 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 증설공사, 소방, 도시가스공사, 오디오, 철거, 냉난방기, 화장실공사, 테라스, 닥트, 간판, 의탁자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또는 보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또는 보험	확정 금액
개점행사비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sup>※ &</sup>quot;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비용"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게 됩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3,300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소멸성 비용	1. 가입비 2. 영업 노하우, 가맹점운영권 부여 3. 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 정보, 자료제공 *계약 해지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교육비	2,200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교육 시 소요된 비용	1. 교육비 2. 영업 노하우, 운영노하우 제공 3. 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조리/영업 등 필수교육 제공 * 계약 해지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총계	5,500	_	-	_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

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sup>①</sup>	금액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sup>®</sup>	비고
물류보증금	ı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 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 금(원·부재료 대금 포 함)의 3배 이내 <sup>®</sup>
총계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3,3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보증금	0	부가세 미포함
합계	5,5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20평기준)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거래업체 ( <i>협력업체)</i>	34,800	2,320	시공 시작 전일		

간판	가맹본부 또는 거래업체 (미지정)	5,500	-	설치 5일 전	 추후협의	시세에 따라 변동가능
설비 및 기기	가맹본부 또는   거래업체 ( <i>협력업체</i> )	16,500	-	설치 5일 전		
집기 및 비품	가맹본부 또는 거래업체 ( <b>협력업체</b> )	3,300	-	입고 5일 전		
의탁자	가맹본부 또는 거래업체 (미지정)	2,200	-	입고 10일 전		
POS	가맹본부 또는 거래업체 <i>협력업체</i>	-	-	입고 10일 전		
홍보인쇄물	가맹본부	550	-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초도비품	가맹본부	-	-	입고 3일 전		
총계	-	62,850	-	-	-	-

- 전기 증설공사, 소방, 도시가스공사, 철거, 냉난방기, 화장실공사, 테라스, 기타 소모품 등은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20% 상당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POS기기는 구매 또는 대여 모두 가능합니다.

  단. POS 프로그램은 본부가 지정하는 프로그램은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희망자가 직접 공사를 할 경우 기획관리비로 평당 220,000원(VAT포함) 지급해야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점포입지를 선정한다.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습니다.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인테리어, 간판, 설비, 집기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 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본부					브랜드이미지, 상품광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취기보그 터다		광고/판촉 동의	기 또는 약정서  후에는	가맹점모집+ 상품광고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및 약정서에 따름	세월 이 반환되		가맹점모집 광고 시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판촉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2,200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필요시 실시
POS사용료	가맹본부	협의	협의	-	_	-
지연이자	가맹본부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나머지	-	-	-	"VII. 가맹본부 의 경영 및 영 업 활 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 사자의 귀책사 유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 정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 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 관리	수시	문의: 운영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문의: 총무팀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맹비(10년 후 신규 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 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 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 기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단 양도 시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 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양도자의 잔여기간 승계가 아닌 갱신권 보장기간인 10년을 보장)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 받은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익스테리어(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의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약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조건으로 무상 제공한 각종 제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반환합니다.
- ③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합니다. 이때 철거・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철거·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정산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 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단위: 원)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_	-	-	2023년 기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물품구입					
물품구입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2023년 기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3] 참고	[별첨3]의 취급품목 이외의 제품(품목)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지정업체 에서 공급받은 상품 및 메뉴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3] 가맹본부 취급품목과 가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OPC GO GTI	가맹본부	계열회사	
'마라벅스'와 동일한 업종(기타 외식)	마라벅스	해당 없습니다.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특수상권이 아닌 경우	점포 간 이격 거리 반경 1km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sup>※</sup>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등)은 위 설 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 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 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완료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 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 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 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 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 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sup>※</sup> 해당 사항 없습니다.

6)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	-	-	-
	_	-	-	-
홈쇼핑	-	-	-	-
전화권유판매	-	-	ı	-

<sup>※</sup> 해당 사항 없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sup>①</sup>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가맹점 총 매출액)	기타 오프라인 (직영점 총 매출액)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sup>②</sup>
2023	68.1%	31.9%	0.0%	0.0%

상기 매출액 비중은 가맹사업 양도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sup>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②</sup>	
2023	100.0%	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습니다)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 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서 제6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 ※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 제33조

#### (2) 즉시 해지사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 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이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 제35조

#### 일반적 해지 사유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한 경우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또는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 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자체 조달하여 용도 외 사용하거나 이를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공급비용 미결제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타가맹점에 공급 또는 경쟁업자에게 공급한
- 경우
- 자점매입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본계약의 준수사항 위반 시, 특약사항 위반 시
- 가맹점사업자가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 제27조, 제35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겨우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 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통일화 및 활성화를 위한 영업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4.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또한, "본 계약"은 양 당사자 상호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 습니다.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양도자의 잔여기간 승계가 아닌 갱신권 보장기간인 10년을 보장)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	
		권리의무	면으로 승계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 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 (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대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대리인과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절차 완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 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관리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1:00 (가맹본부와 협의 시 조절 가능함)	주6일 이상 (가맹본부와 협의 시 조절 가능함)	문의: 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15평 기준)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고용직원, 아르바이트	점주의 부재 시 사전 통보

<sup>※</sup> 권장 종업원 수는 동시 투입인원을 말합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sup>※</sup> 가맹점 방문 빈도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에 따라 가맹점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1 1 2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正다 길시	-17-
광고		가맹사업법 제1	2조의6제1항에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 가맹점의 행사 참여	대중매체 광고
	브랜드이미지광고, 상품광고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모집+ 상품광고	100%	0%	-	
	가맹점모집광고	100%	0%	-	-
판촉	전국 및 지역별 판촉	100% 0%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 행사, 광고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별 지역판촉행 사	0%	100%	별도절차 없습니다	지역광고 등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7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7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부가세없습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금사십만원(부가세없습니다)를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23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금일천만원(부가세 없습니다)를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 가맹점사업자가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 가맹본부로부터 양수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포를 양도한 경우 금일천만원(부가세 없습니다)를 위약벌로 가맹본 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D-59~58(2일)	
상담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D-58~56(3일)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57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p11~p12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40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상가 실측 및 인테리어 견적 확정	D-39~35(5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 최종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공사착수	D-35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D-20~11(10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진행사항 점검, 기기, 물품 입고	D-35~6(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7~5(1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 황이나 각매장의 특이사항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고나매케이트 베크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 일
3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u>한국공정거래조정</u>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 1588-1490 , 홈페이지 : <a href="http://www.kofair.or.kr">http://www.kofair.or.kr</a>) 또는 시 · 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 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sup>①</sup>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sup>②</sup>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sup>3</sup>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sup>®</sup>	비고
○ 설, 어 등이 의 이 이 의 이 의 이 의 의 이 의 의 이 의 의 이 의 의 이 가 로 경 의 이 나 사이 의 의 이 가 로 경 의 이 나 사이 의 의 이 가 이 의 의 이 가 이 의 의 이 가 이 의 의 이 가 이 이 의 이 가 이 이 의 이 가 이 이 이 이	○ ○ 안판교체 명 인 이 인테리어 공 이 이 의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 실내건용의 제외한 에 일체 소 지의한 에 일체 수 있는 이 등에 가 없이 무관하게 가 당에 가 당에 가 당에 보다 되는 제외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아 가맹점사업자의 병등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점부) 가맹 본부 에게 가맹 지급 매우 이일 이내에 가맹본부 되자에게 가맹본부와 이 이내에 가 있는 경우 1년의 가 있는 경우 1년의 가 있는 경우 1년의 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급 전기를 지어 함께 전기를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전기를 지어 되었다.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전기를 지어 되었다. 이 나에 지급 전기를 하는 사계약서 이 일 부담액을 지급 사업자에 걸쳐 가망지급 지수에 걸쳐 가망지를 본할지급 보기를 하는 사계약서 있는 서류 가망지급 보기를 하는 사계약서 일로 보기를 되었다. 기가	로년가의는계료의업포는맹담잔에는은지거미경일 3 에 부없로 종약영 되 가부 간하액하하이 한 내본임유이예지도 ) 아부 중기례담급니 급한 한 등 하이 하는 이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요청시 별도 협의)	문의: 관리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 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 기간	담당 슈퍼바이저 경영 컨설팅 추가제공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메뉴 가공 등	이론, 실습	오픈 7일 전 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실습	필요시	필요 시
재교육	오퍼레이션 미흡 시 운영/조리 전반적 재교육	이론, 실습	필요시	필요 시
특별 교육	필요 시	이론, 실습	필요시	필요 시

※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 제18조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교육방식	비용(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14일(80시간)	실습교육, 이론교육	220만원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별도계획	별도계획	별도 책정	신 메뉴 출시 등
재교육	별도계획	별도계획	별도 책정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별도계획	별도계획	별도 책정	필요 시 실시

<sup>※</sup> 교육일정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sup>※ &</sup>quot;신규 교육"의 최소시간은 최초 매장실습 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입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가맹점 오픈이 지연되거나 가맹점에 근무 할 수 없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_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_	_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31-258-0179)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 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2. 가맹본부 재무증명

### 2023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3. 가맹본부 취급품목과 가격

(2022년 09월 05일 기준)

판매상품 및 가격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메뉴/서비스/프로그램) 명칭 및 권장가격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워: 원					
마라탕	6,000부터 (100g당 1,600)	새우볶음밥	6.000			
마라상궈	15,000부터 (100g당 3,000)	공깃밥	1,000			
꿔바로우 (소)	7,000	튀김곰빵	5,000			
꿔바로우 (대)	15,000	멘보샤	5,000			
새우 꿔바로우 (소)	7,000	미니전	2,000			
새우 꿔바로우 (대)	15,000					

<sup>※</sup>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앞 쪽)

		ᆉᄜᅩᄼ	게치시	처 서		처리기간
		가맹금예치신청서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1 BII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맹사업거래의 공정 제2항에 따라 위의					
		년	월	일		
[별첨1]		신청인:			(서	(앞 쪽) 명 또는 인)
예기	치기관의 장 귀 <sup>:</sup>	하				
지점장		•				